

2000. 12. 23

# 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총열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 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24	11. 24	12. 22	12. 22	문화관광과장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12. 16	12. 16	"	"	세정과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	"	"	환경미화과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	"	"	"	"	"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	"	"	지적과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 제안이유

- 국가사적 제189호 임충민공 충열사에 대한 관람료 징수(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95년부터 징수하여 왔으나 매년 관람(방문)객의 1회성 관람 등으로 해마다 수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관람료(주차료포함)무료화를 통하여 보다 관람객의 증가효과를 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충주시총열사관람료징수조례의 폐지

## 나.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법률 제16,928호, 2000. 7. 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세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지방세법개정안이 2000. 10. 21. 국회에 제출되어 2001년 시행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세과세표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 ⇒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주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현행 충주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현재 운영중인 충주시시세감면조례는 금년말로자동 폐지됨)
  - 국가유공자·장애인·교통·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국가유공자 단체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 감면규정중 일부조문 및 감면대상 삭제
  -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삭제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 확대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 농공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 기타 조문 및 용어정리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기타 용어 정리

## 라.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이중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자체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규정된 이중규제사항 삭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제11조),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제17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정비(안제18조)
- 기타관련조항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안제13조 내지 안제15조, 안제21조)

## 마.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

## 바.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현행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에 의거  
발급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충북 지적 13500-442('93. 10.  
18)호의 지시로 토지대상 등본에 고무인을 날인 후 개별공시지  
가를 수기 기재발급을 병행하여 왔으나 기재발급시 위·변조  
및 착오기재 발급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와 발급수수료 이원화  
로 민원집중 및 수수료체계의 불합리로 기재발급제도를 폐지하  
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규정서식으로 단일화하여 전산발급

### 2) 주요골자

- 규정서식에 의한 전산발급과 토지대장에 고무인 날인 후 수기로  
기재하여 병행 발급하던 것을 수기기재발급제도 폐지에 따른  
수수료를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입니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없 음”

### 나.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건에 대하여 2000. 12. 1 제57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결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가 늘어 날 것으로서 예상되어  
현시세 심의위원회에서 병행 심의 처리하는 것이 보다 예산절  
감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부결” 한바 있음.

## ○ 이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결과

-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었으며
- 개정후 현행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지방세법 제7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99. 12. 31 개정되었음.
- 위 사항중 개정된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심의사항"이 개정후 현행 시행령 제58조에 삭제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 2에 "지방세과 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2000. 7. 29 본 조를 신설하였으므로

## ○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됨.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만료되어 자동 폐지되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연장하고
-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폐지하였으며
-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 이를 근거로 하여 충주시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행정규제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이중규제사항등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마.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충주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건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결과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에 “공중화장실의설치·관리”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의 “과태료부과징수등”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외의 조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존치하여도 무방하나 제18조의 규제사항을 삭제하면 존치하여도 별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검토함.

## 바.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토지(임야)대상등본에 고무인을 날인후 개별공시지가를 수기 기재발급시 변조 및 착오기재발급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규정서식에 의거 전산발급 민원을 해소하자 하는 것임.

##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없음”

나.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종전의 14조3항은 존재하는지?

○답변 : 시세심의위원회는 존치되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상이함

▶질의 : 기능이 중복되므로 삭제할 용의는?

○답변 : 지침 및 상위법에 의함.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질의 : 기타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사항은?

○답변 : 농어촌정비등에 의한 사항등이 있음

라.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제13조의 “법”이란?

○답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을 말함

마.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없음”

바.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과 중복이 되는지?

○답변 : 예

##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총열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부 결
- 나.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라.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바.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붙 임

- 가. 충주시총열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
- 나.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마.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 1부
- 바.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